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공주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998호 2026. 10. 15.(목)



<유네스코 세계유산 마곡사>



【공 고】

제2026-2745호 공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제2026-2764호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9
제2026-2765호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5

【고 시】

제2026-203호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26
제2026-20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32
제2026-205호 『반포면 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34
제2026-206호 명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36

공주시 공고 제2026 - 2745호

「공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함
- 다.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에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조직) 소속자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규정을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제1조)

나.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명확화(제12조제1항)

다.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에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조직) 소속자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참여 및 민·관 협력 기반 강화(제13조제4항)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11. 5.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경로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경로장애인과장(전화: 041-840-8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 32552

- 전화: 041-840-8321, 팩스: 041-840-3712, 전자우편: lspsi@korea.kr

5. 참고사항

이 일부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의 건

입법예고(안)	의 건(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제출처 : 공주시 교육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041-840-8321)

☐ 제출방법 ☐ 우편: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041-840-3712, 전자우편 : lsps@korea.kr

공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하고 시행하는**”을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합지원협의체**”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협의체**”로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u>정하고 시행하는</u>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하고</u> ----- ----- ----- ----- ----- ----- ----- -----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u>통합지원협의체</u>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협의체-----.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이 경우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 3. (생 략) <u><신 설></u> 4. (생 략) ⑤ · ⑥ (생 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u>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	---

공주시 공고 제2026-2764호

「공주시 공무원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무원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2026년 공주시-공주시공무원직노동조합 단체협약」(26. 8. 5. 개정)에 따른 징계기준을 현행화하여 취업규칙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계 비위 유형 및 서면 경고 추가
 - 별표 5(징계기준) 수정
 - 질서 및 풍기 문란 위반(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항목 추가
 - 서면 경고(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추가
 -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경고

□ 제66조의2(징계의 가중) 내용 수정

- 기존 : 2년 이내 같은 종류의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 시, 1단계 위 징계의결 요구
- 변경 : ① 이전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② 같은 종류의 징계로 징계의결 요구 시, 1단계 위 징계의결 요구

3.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5.(목)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자치행정과(교류협력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l7y7w7@korea.kr
- 전 화 : 041-840-2254 / FAX : 041-840-3707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041-840-22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 견

행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제66조의2 전단 중 “**이내**”를 “**이내이거나**”로, “**비위로**”를 “**징계로**”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징계기준(제6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나. 회계질서 문란 다. 기타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2. 비밀업수의 의무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3.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4. 직장 이탈금지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5. 청렴의무 위반	[별표 6]와 같음			
6.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하거나 부정한 청 탁을 한 경우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7. 영리업무 종사 등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8.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나. 음주운전 다. 기타	[별표 7]와 같음 [별표 8]와 같음			
9. 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10. 규정 및 명령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11. 질서 및 풍기 문란 위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해고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징계의 종류) (생략)	제60조(징계의 종류)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 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은 경우 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제66조의2(징계의 가중) 이전 징 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2년 <u>이</u> <u>내</u> 같은 종류의 <u>비위로</u> 다시 징 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 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 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6조의2(징계의 가중) ----- ----- <u>이내</u> <u>거나</u> --- <u>징계로</u> ----- ----- ----- -----.

공주시 공고 제2026-2765호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26. 5. 개정)에 맞추어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전심사 간소화 대상 정의 및 사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수정(안 제5조의2)
 - 사전심사 절차 변경 (생략 → 간소화)
 - 1개월 이내 기간제근로자 사용 및 휴직대체 계약 체결의 경우 등
 - 사전심사위원회 내부위원 조정 및 외부위원 추가
 - 내부위원 : 예산부서의 장, 인사부서의 장
 - 외부위원 : 인사노무·노사관계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20조)

□ 규정 내 단어 일원화(퇴직)에 따른 별지 서식 수정 [별지 제12호 서식]

3.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5.(목)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자치행정과(교류협력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l7y7w7@korea.kr

- 전 화 : 041-840-2254 / FAX : 041-840-3707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041-840-22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5.(목)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자치행정과(교류협력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이메일 : l7y7w7@korea.kr
- 전 화 : 041-840-2254 / FAX : 041-840-3707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041-840-22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 견

행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사부서의**”를 “**인사부서에 통보함으로써**”로, “**거치지 않을**”을 “**간소화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개월 이내의 일회성 단기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나 단기 파견·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2. 휴직대체·갑작스러운 퇴직 등으로 그 공백기간 동안에만 채용하는 경우
3. 재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4. 사전심사 후 채용계획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5조의2제2항 중 “**8명 이내**”를 “**5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업무 담당**”을 “**인사부서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을 “**인사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 이상,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내부위원: 인사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
 2. 외부위원: 인사노무·노사관계 전문가, 기관 사업(복지·교육분야 등) 관련 전

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변호사,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⑩ 사전심사위원회는 해당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근로자의 날**”을 각각 “**노동절**”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소속부서명		채용기간				신청인원				담당업무				
인력 운용 현황	공무직 정·현원	직 종												
		결과원												
		정 원												
		현 원												
	기 간 제 근 로 자 채용현황	연평균 인 원	당해 연도 월별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사전 검토 사항	사업현황	사업명								재원	국비/도비 비율%			
		사 업 규 모	<i>m²/평/식</i>							사업 기간				
	기존 인력 활용 여부													
채용 계획	채용 목적 및 필요성								채용 방법					
	자격기준 및 업무내용													
	인 건 비 소요예산	예산액	천원			재원		국비/도비 비율%						
		구 분	소요액			산출근거								
		보 수	천원											
		수 당	천원											
	고 령 자 가능여부	☐ 여 ☐ 부			단시간근로자 가능여부			☐ 여 ☐ 부						
담당자	행정8급 000(전화0000)				팀장		행정6급 000(전화0000)							

※ 소속부서는 ‘과’ 단위 이상으로 작성

퇴 직 원

소 속 :

직 위 : 기간제근로자

성 명 :

퇴직사유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20 년 월
일자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공 주 시 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전심사) ① ~ ④ (생략)	제5조(사전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부서는 <u>인사부서의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u> 다만, 인건비 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와 사전합의를 하여야 한다.	⑤ ----- ----- <u>인사부서에 통보함으로써</u> -- <u>간소화할</u> ----- . ----- ----- -----.
1. <u>재난 등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u>	1. <u>1개월 이내의 일회성 단기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나 단기 파견·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u>
2. <u>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거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u>	2. <u>휴직대체·갑작스러운 퇴직 등으로 그 공백기간 동안에만 채용하는 경우</u>
3. <u>연중 수개월에 걸쳐 사업이 완료되며, 총 근로일이 30일 미만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u>	3. <u>재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u>
<u><신 설></u>	4. <u>사전심사 후 채용계획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u>
제5조의2(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	제5조의2(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② -----

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본청 국장 및 직속기관 소장

2. 인사부서의 장

3. 예산부서의 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 ⑨ (생략)

<신설>

--- 5명 이상-----
-----.

③ ----- 인사부서의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 이상,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내부위원: 인사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

2. 외부위원: 인사노무·노사관계 전문가, 기관 사업(복지·교육 분야 등) 관련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변호사,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⑤ -----
-----.

-- 인사부서의 장-----
-----.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사전심사위원회는 해당 심사

	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근무시간 및 휴일) ①・② (생략)	제20조(근무시간 및 휴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유급으로 한다.	③ 노동절----- ----- ----- ----- ----- ----- -----.
④ 소속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u>근로자의 날</u> 은 대체할 수 없다.	④ ----- ----- ----- ----- ----- ----- ----- ----- ----- 노동절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폐기물 재활용시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명칭 : 폐기물 재활용시설 증축공사
- 목적 : 종합재활용처리시설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하고자 함.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폐기물 재활용시설 증축공사 ($A=1,776.39\text{m}^2$)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대길환경 주식회사 유만중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백제큰길 109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8.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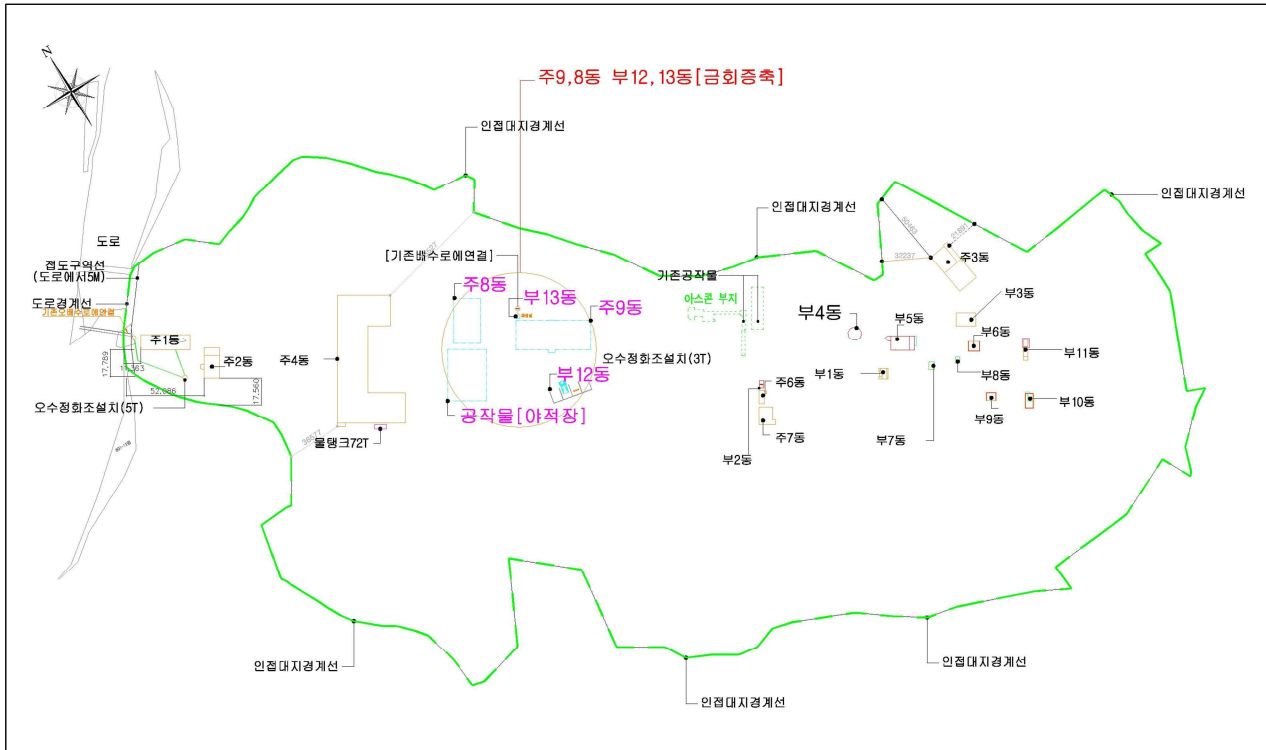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1 참조

-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2. 공사계획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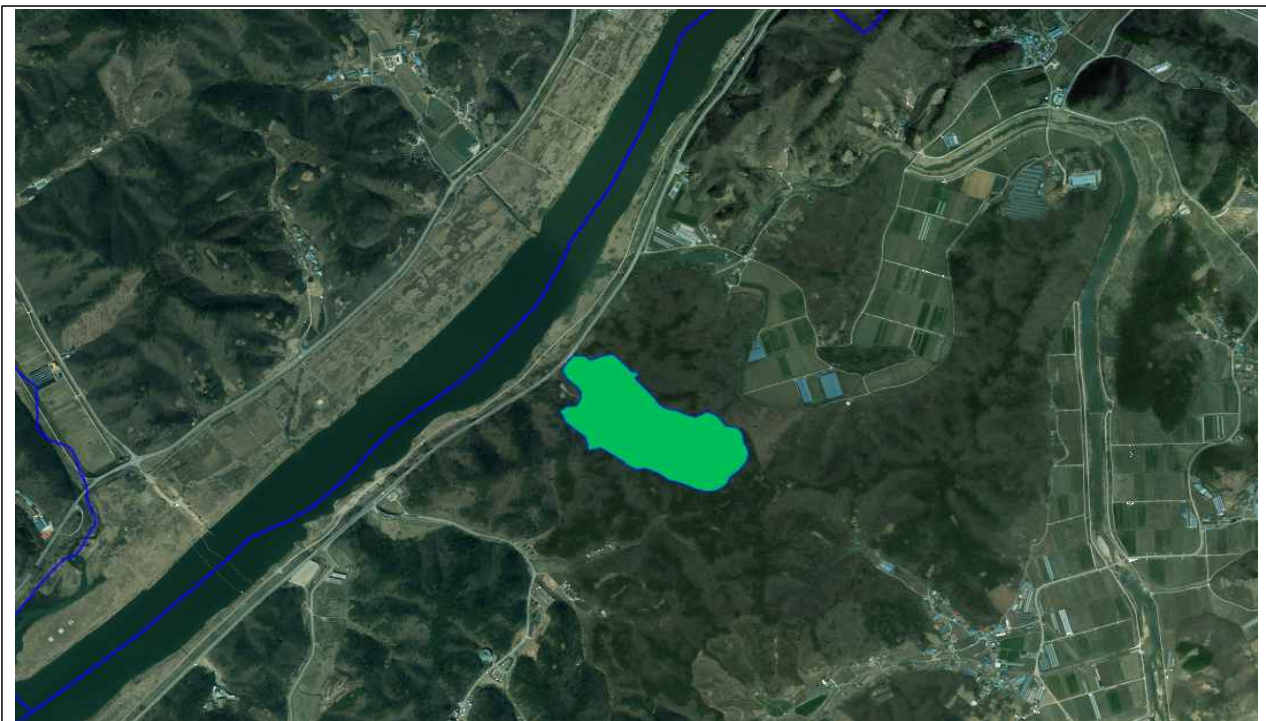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순번	토지소재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면	리	지번				성명	주소	
합 계			38필지		155,493	155,493			
1	이인	만수	495-1	잡	18,490	18,490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	이인	만수	495-3	잡	1,232	1,232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	이인	만수	435-3	잡	19,969	19,969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4	이인	만수	435-15	잡	1,543	1,543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5	이인	만수	435-18	잡	2	2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6	이인	만수	435-20	잡	2,535	2,535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7	이인	만수	435-22	잡	36,466	36,466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8	이인	만수	500-1	잡	2,849	2,849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9	이인	만수	500-2	잡	2,111	2,111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0	이인	만수	435-4	잡	6,419	6,419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1	이인	만수	435-26	잡	79	79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2	이인	만수	435-28	잡	427	427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3	이인	만수	435-2	잡	42,235	42,235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4	이인	만수	435-7	잡	1,284	1,284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5	이인	만수	435-10	잡	918	918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6	이인	만수	435-12	잡	881	881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7	이인	만수	435	잡	902	902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8	이인	만수	436	잡	635	635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9	이인	만수	435-1	잡	165	165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0	이인	만수	493	잡	1,007	1,007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1	이인	만수	494	잡	2,079	2,079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2	이인	만수	495	잡	179	179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3	이인	만수	496	잡	622	622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4	이인	만수	496-1	잡	274	274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5	이인	만수	497	잡	450	450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6	이인	만수	497-1	잡	1,107	1,107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7	이인	만수	498	잡	185	185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8	이인	만수	499	잡	417	417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9	이인	만수	500	잡	1,660	1,660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0	이인	만수	501	잡	296	296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1	이인	만수	501-16	잡	111	111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2	이인	만수	502-3	잡	89	89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3	이인	만수	502-4	잡	21	21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4	이인	만수	502	잡	3,178	3,178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5	이인	만수	502-2	잡	550	550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6	이인	만수	530	잡	557	557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7	이인	만수	531	잡	53	53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8	이인	만수	532	잡	3,516	3,516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붙임2. 공사계획도면



도시관리 계획도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서

사업시행지의 위치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2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명 칭	폐기물 재활용시설 증축공사
인가 내용	사 업 규 모	
	○ 폐기물 재활용시설 증축공사 (A=1,776.39㎡)	
사업시행자	소요 공사비	
	1,306백만원	
사업시행자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백제큰길 1096
	성 명	대길환경 주식회사 유만중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8.1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붙임 조건을 부여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합니다.

2026. 10 . 15 .

공 주 시 장

붙임 인가조건 1부.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

실시계획인가조건

1. 사업시행에 있어 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착공계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 협의에 대한 기 제출된 조치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을 시행하고 이행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된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
4. 인가조건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완료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5. 준공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따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편입토지 포함-사유지에 한함)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인 공주시에 무상으로 귀속하여야 함.
(무상귀속에 소요되는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
6.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①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② 부정한 방법으로 이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때
 - ③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③ 인가권자의 정당한 지시 또는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7. 관련법 의제협의를 하지 않은 타법의 인허가 사항은 개별법에 맞도록 이행한 후 사업 추진 하여야 함
8. 사업시행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사업자 시행자 책임하에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9. 본 허가 구역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이므로, 장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목적 외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필요에 의해 원상복구 명령이 있을 경우, 피허가자는 즉시 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함.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 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송선동 큰말1길 92-34외 9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10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041-840-825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10. 08.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반포면 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촌지역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반포면 하신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목적 : 농촌 마을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및 마을 활력, 특화발전 도모
3. 사 업 비 : 500백만원(도 30%, 시 70%)
4. 주요 사업내용
 - 가. 위 치 :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일원
 - 나.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함께하신 문화공간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인적자원양성, 함께 성장하는 정원마을, 행복한 정원마을 베이커리 나눔

- 마을 자을 S/W : Zero-100 정원마을, 우리는 정원마을 한가족,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세부사업명 (사업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읍면	리				
하신리 마을만들기 사업	반포면	하신리	205-3	대	717	하신리마을회
	소계				717	

5.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6.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4개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자치안전국 지역활력과(☎ 041-840-2364)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041-850-6465)로 문의 바랍니다.

명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명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구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공 주 시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지구명	위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		
명곡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 일원	침수 위험	나	129,235	지방하천 명곡천 및 지류 소하천(요골천, 마나골천, 명곡저수지천)은 하폭이 협소하고 제방고 및 여유고가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 명곡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월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됨.	신규

2. 지구 지정 기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까지

3. 지역·지구 효력 등

- 지역·지구 지형도면 등 : 붙임1 참조
- 지역·지구 등 효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발생

4.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명곡	2026년 이후	28,665	하천재해	◎ 명곡천(지방하천) : 축제 L=1,527m, 보축 L=1,777m, 교량 4개소, 배수공 4개소 ◎ 요골천(소하천) : 축제 L=1,531m, 보축 L=318m, 교량 7개소, 보 및 낙차공 3개소, 배수공 2개소 ◎ 마나골천(소하천) : 축제 L=182m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1개소, 배수공 1개소 ◎ 명곡저수지천(소하천) : 축제 L=37m, 보축 L=55m ◎ 부대공	신규

※ 사업시기 및 내용은 사업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지정 해제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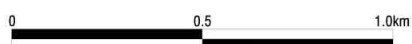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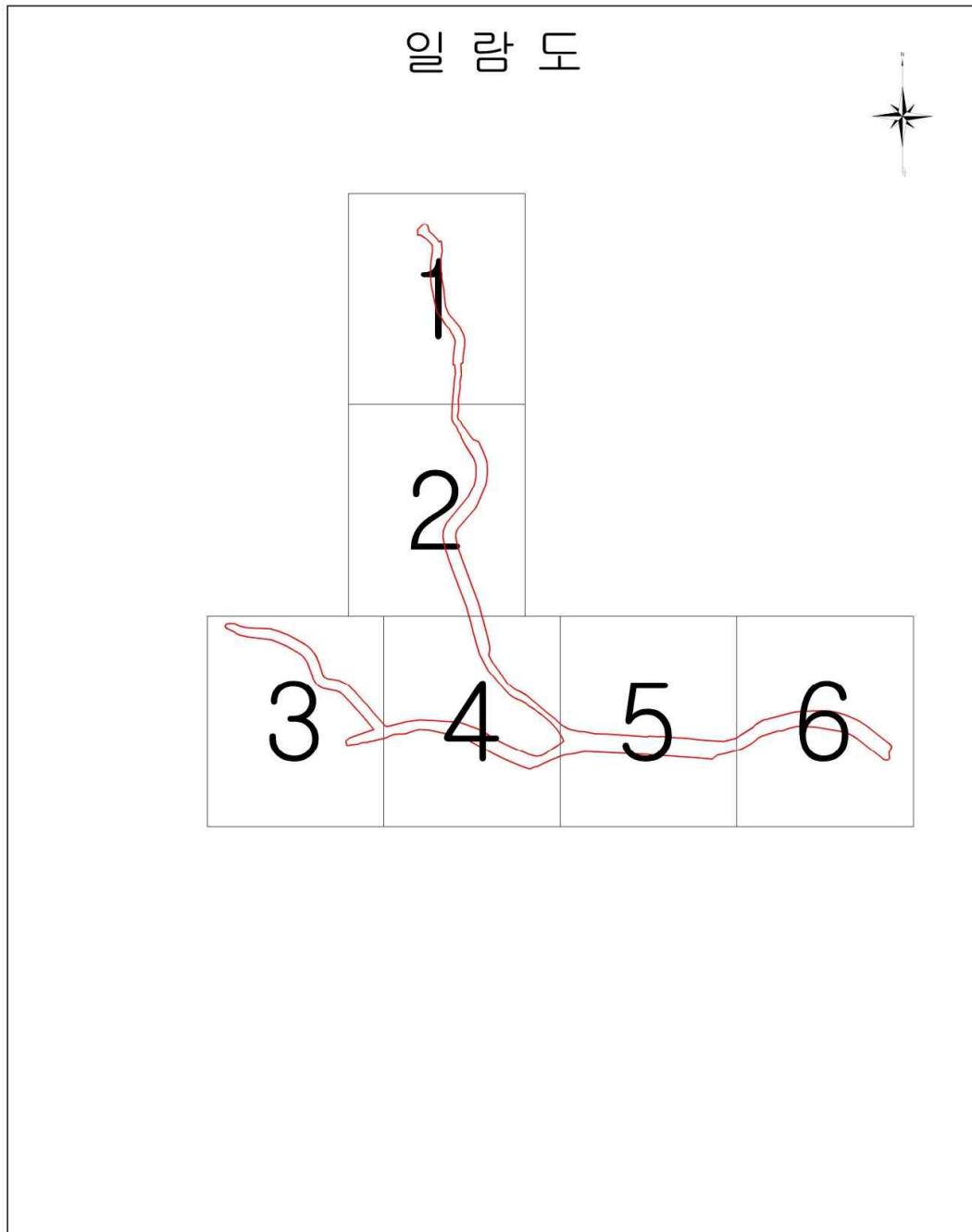
5.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열람장소 : 공주시청 안전총괄과(041-840-2293) 지형도면, 세목조서 비치

붙 임 : 지형도면 및 세목조서(명곡 지구) 1부. 끝.

□ 명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일람도

명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일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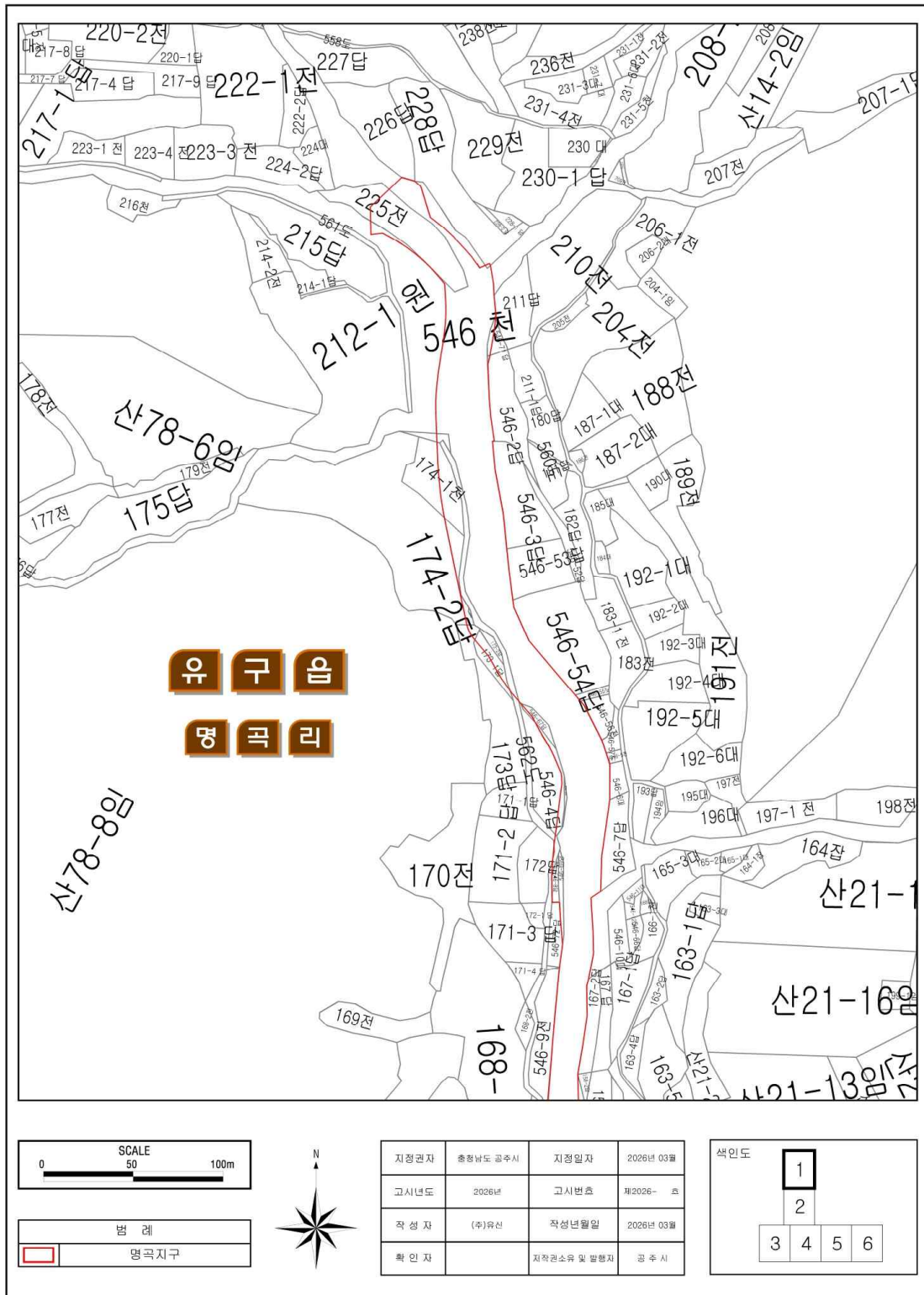
구 분	입안 및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3차 확인자
소 속	(주)유신	공주시 안전총괄과		
최 위				
최 명				
성 명				
확 인 인				

·지정권자 : 공주시장
 ·지정일자 : 2026년 3월 일
 ·고시년도 : 2026년 3월 일
 ·고시번호 : 공주시고시 제 2026 - 000호
 ·작성 자 : (주)유신
 ·작성년월일 : 2026년 3월 00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공주시장

범 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색안도	
1	2
3	5 6 7 8
4	

□ 명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1/6)

명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도 (1/6)



명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도 (2/6)

지정권자	충청남도 공주시	지정일자	2026년 03월
고시년도	2026년	고시번호	제2026- 호
작성 자	(주)유신	작성년월일	2026년 03월
확인 자	지적권소유 및 발행자	공 주 시	

색인도

1	2	3	4	5	6
---	---	---	---	---	---

명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도 (3/6)

산60-30임

산60-28임

유 구 읍

명 곡 리

SCALE 0 50 100m

법 레

명곡지구

지정권자	충청남도 공주시	지정일자	2026년 03월
고시번호	2026년	고시번호	제2026-호
작성일자	(주)유신	작성년월일	2026년 03월
확인자		지적관소유 및 발행자	공 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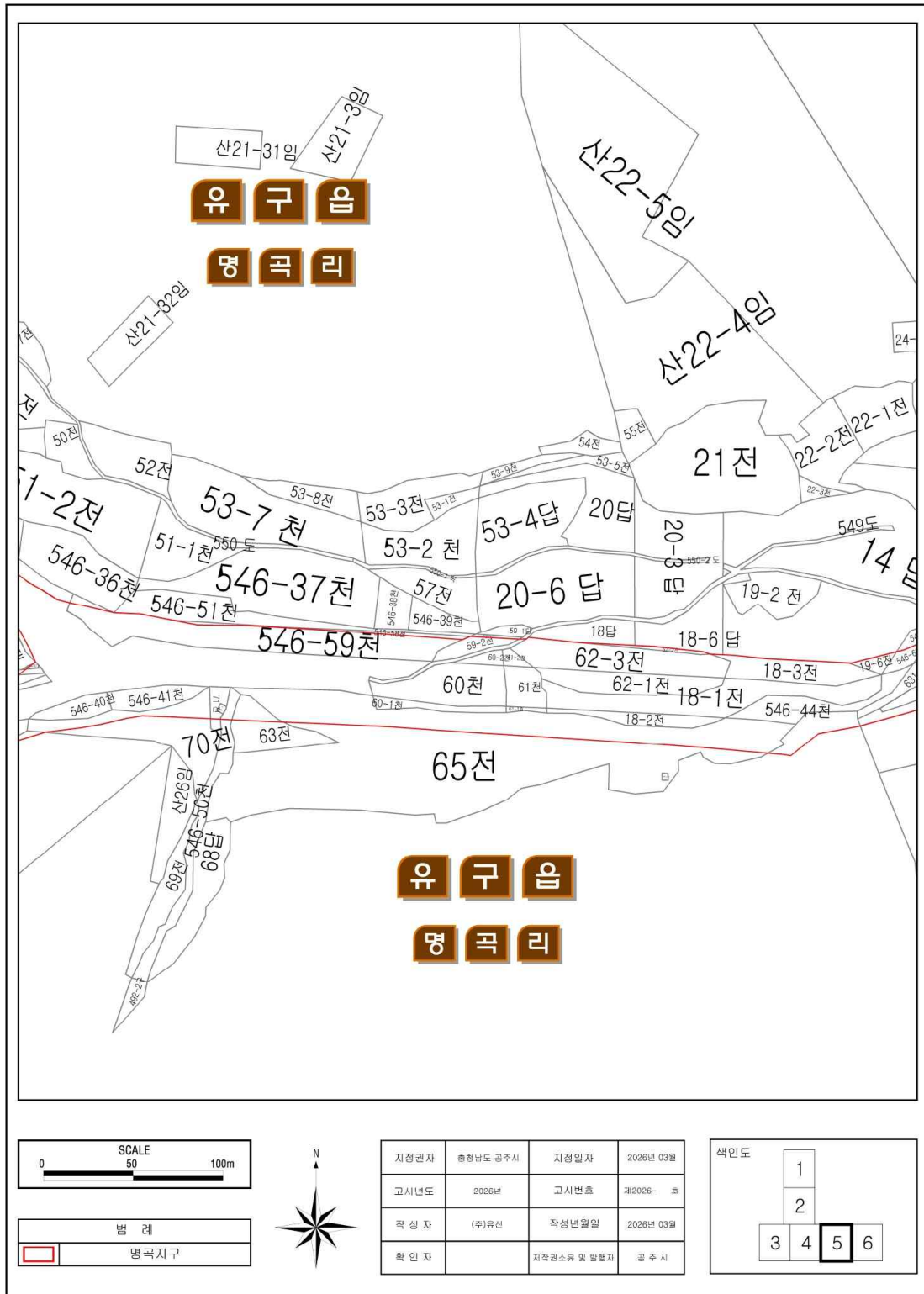
색인도

1			
2			
3	4	5	6

명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도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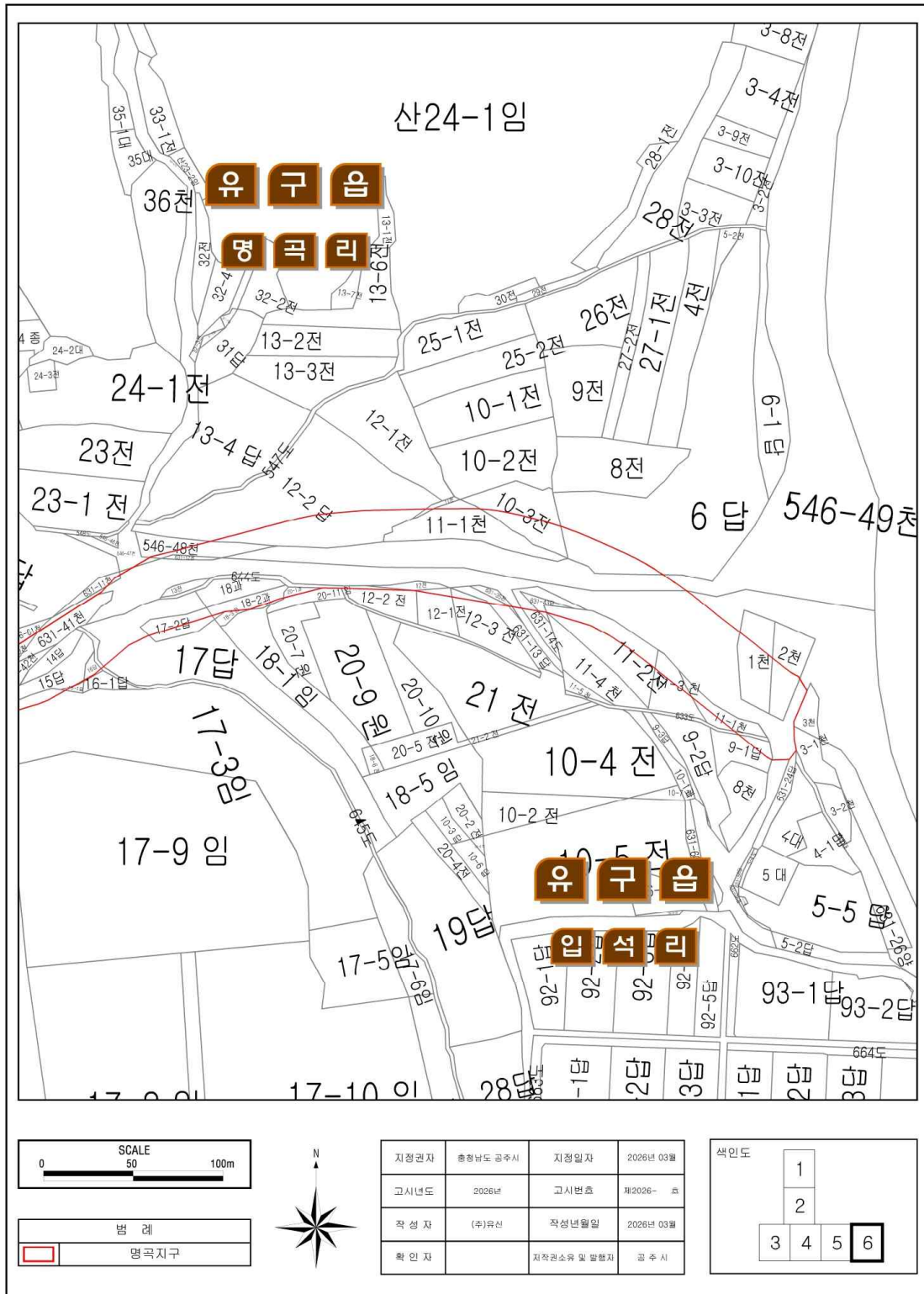
□ 명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5/6)

명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도 (5/6)



□ 명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6/6)

명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도 (6/6)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편입토지조서 - 1

순번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공부상	편입	
1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	천	932	616	
2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2	천	826	357	
3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9-1	답	565	96	
4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1-1	천	417	299	
5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1-2	전	1,383	530	
6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1-3	천	579	171	
7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2	전	147	120	
8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2-1	전	478	53	
9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2-2	전	541	45	
10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2-3	전	897	56	
11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3	전	102	102	
12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4	천	317	317	
13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5	천	655	655	
14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5-1	천	39	5	
15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6	답	81	70	
16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7	답	4,485	944	
17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7-2	답	414	238	
18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7-3	임	10,503	301	
19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8	과	454	454	
20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18-2	과	294	294	
21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20-1	과	62	62	
22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631-1	천	97,706	6,590	
23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631-11	천	178	12	
24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631-12	천	62	56	
25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631-13	답	455	98	
26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631-14	도	382	204	
27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631-35	천	81	80	
28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631-41	천	547	547	
29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631-42	천	458	349	
30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631-43	답	108	96	
31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633	도	182	31	
32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644	도	426	215	
33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645	도	1,038	62	
3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94-1	천	658	212	
3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94-3	답	2,061	282	
3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94-4	천	426	426	
3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94-5	천	711	188	
3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94-6	천	61	61	
3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94-7	천	14	14	
4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98	전	4,033	1,860	
4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99	전	2,043	1,575	
4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01	답	1,626	66	
4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06	답	2,337	199	
4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07	답	1,964	65	
4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08	답	2,179	151	
4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09-9	천	410	110	
4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10	답	1,534	61	
4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12	전	426	175	
4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13	천	3,515	3,131	
5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13-1	천	1,602	60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편입토지조서 - 2

순번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공부상	편입	
5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14	답	4,450	140	
5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14-1	전	786	410	
5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15-1	전	1,177	601	
5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15-2	답	1,240	621	
5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16	답	1,316	1,316	
5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18-2	답	1,620	16	
5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24	답	1,258	401	
5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24-1	답	871	871	
5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25-1	천	364	135	
6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25-2	전	469	5	
6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26	전	3,016	700	
6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27	전	824	130	
6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27-1	전	184	81	
6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36-1	전	2,974	163	
6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36-6	전	2,984	459	
6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36-7	전	1,000	662	
6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60-2	대	415	137	
6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60-3	전	347	347	
6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60-4	대	449	74	
7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60-5	대	35	35	
7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61-1	답	724	63	
7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68	답	823	39	
7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69	전	1,098	86	
7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70	답	443	108	
7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71	답	2,625	32	
7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72	답	1,190	806	
7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73	답	2,096	548	
7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74	답	853	723	
7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75	답	142	142	
8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76-1	전	2,136	202	
8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	천	173,966	53,415	
8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1	답	88	41	
8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2	답	906	5	
8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3	답	1,165	2	
8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4	답	924	140	
8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8	답	83	83	
8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9	전	770	7	
8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16	대	364	61	
8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17	전	568	72	
9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18	답	622	195	
9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21	답	302	32	
9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23	전	122	89	
9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24	답	98	78	
9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26	답	50	50	
9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27	답	1,558	1,116	
9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28	답	890	97	
9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40	천	400	400	
9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41	천	586	586	
9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44	천	823	823	
10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6	답	9,501	664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편입토지조서 - 3

순번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공부상	편입	
10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0-3	전	1,192	479	
10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1	천	63	16	
10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1-1	천	1,269	1,208	
10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2-2	답	5,854	1,414	
10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8-1	전	2,136	2,136	
10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8-2	전	484	484	
10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8-3	전	951	951	
10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9-6	전	140	140	
10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9-2	전	297	297	
11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60	천	1,363	1,363	
11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60-1	천	325	325	
11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60-2	천	137	137	
11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61	천	453	453	
11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61-1	천	63	56	
11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61-2	천	99	99	
11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62-1	전	1,106	1,106	
11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62-2	전	103	92	
11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62-3	전	1,632	1,632	
11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63	전	962	231	
12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65	전	13,546	4,040	
12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70	전	1,997	656	
12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71	전	194	149	
12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71-1	광	18	18	
12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72-3	대	19	15	
12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75-1	전	213	213	
12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76	전	356	303	
12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80	전	2,263	180	
12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80-1	전	352	81	
12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81	천	1,197	96	
13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82	전	635	635	
13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87	천	182	88	
13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93	답	1,402	1,402	
13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37	전	519	23	
13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38	임	1,088	594	
13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38-1	임	1,510	1,450	
13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38-3	답	1,583	164	
13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38-4	임	126	52	
13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38-5	답	322	200	
13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38-6	임	62	62	
14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38-7	임	69	69	
14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39	답	4,840	29	
14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39-1	답	6	6	
14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44	답	2,053	20	
14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49-1	천	334	334	
14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49-3	천	195	47	
14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50-1	천	321	321	
14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50-4	전	40	40	
14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72	답	671	3	
14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73	답	1,353	36	
15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73-1	답	231	136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편입토지조서 - 4

순번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공부상	편입	
15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73-2	답	62	62	
15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74-1	천	919	397	
15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74-2	답	5,618	213	
15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74-8	답	8	5	
15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225	전	1,517	1,127	
15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228	답	2,460	4	
15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37-2	답	2,317	13	
15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38	전	142	142	
15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39	전	714	21	
16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40	전	804	293	
16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40-1	전	317	147	
16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41	천	132	91	
16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42	천	397	327	
16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55	천	172	13	
16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360-1	전	664	91	
16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47	천	3,358	21	
16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48	천	616	321	
16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49	천	19,728	2,868	
16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50	천	1,004	95	
17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54	답	2,063	2	
17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59	천	2,864	2,822	
17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60	천	200	200	
17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62	답	50	24	
17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63	답	8	5	
17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67	답	111	96	
17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68	답	27	22	
17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69	답	128	105	
17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70	답	60	60	
17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71	답	144	42	
18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9	도	972	172	
18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51	도	2,998	1,168	
18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52	도	645	34	
18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62	도	1,276	503	
18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64	도	1,021	83	
185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65	도	2,529	701	
186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66	도	231	67	
187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67	도	221	113	
188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68	도	973	467	
189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74	도	2,334	31	
190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75	도	555	153	
191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16	임	1,488	205	
192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25	임	307,438	537	
193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27-17	임	115,849	498	
194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65-2	임	1,009,289	23	



선 람	기관위원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8464
 우)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